



위험관리 경시풍조는 보험사업 발전 저해 요인

경제 및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각종 우발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물적손해, 재산상의 배상책임손해, 그리고 상해로 인한 금전상 손해의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또한 그로 인한 손실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손해보험은 이러한 생활의 위험을 주는 각종의 위험을 이용하여 그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한 경제체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업은 고객이 부보하려는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와 평가도 없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당해 위험상황을 정확히 조사, 분석, 평가하여 그 위험이 불량한 위험인지, 양호한 위험인지, 표준위험인지, 표준미달위험인지, 부적격위험인가를 판단한 이후에 그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인수할 경우 그 위험에 적절한 보험요율, 보험조건, 그리고 보유액과 재보험의 방법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이



조 해 군
(한양대 교수·경영학 박사)

행해 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정을 총칭하여 underwriting 또는 「보험자의 위험관리」라 한다(註).

그러므로 underwriting의 미숙이나 불량은 필연적으로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됨은 물론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업이 underwriting을 통한 인수대상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보험사업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underwriting이 제대

로 실시되면 개개의 부보위험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요율의 공평한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underwriting업무는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업에서는 보험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underwriting의 필요성을 1970년대말까지 인식조차 못하고 경시하여 왔는데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손보사업은 지금까지 비교적 높은 보험료와 높은 공금리라는 좋은 여건 아래서 사업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위험관리 부재와 underwriting 기술의 미숙으로 인한 높은 손해율의 발생에 대하여서는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특수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정요율에 적용하도록 되어

* 조해군 : 보험산업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관하여 연구, 보험학회지 제29~30면.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에 있어서 위험관리란 협의의 의미로 이해하여 「인수위험에 대한 관리」와 「보험자의 위험관리서비스」 영역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있으며 또한 효율체계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아 위험관리자의 자율활동에 제약을 주었다는 점.

세째로 재보험교환규정에 의한 강제 재보험제도하에서 출재 비율, 보유한도 및 기타 보험조건등을 제도적으로 확정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원수사는 철저한 위험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보유한도를 결정하고 재보험방식등을 선택하는 등의 underwriting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네째로 위험관리에 대한 경험, 지식의 부족으로 underwriting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손보사업에서는 영업수지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며, 대형 보험사고의 발생, 도덕적 위험의 증대, 해외수재·출재보험의 수지역조현상의 누적 등으로 보험사업의 경영실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주로 위험관리의 부재와 underwriting 기술의 미숙으로 귀결하게 되어 1980년에 보험감독당국이 보험사업의 경영방침과 경영체제를 판매실적위주에서 위험관리중심체제로 전환하여야 함을 손보사업의 중요당면과제로 지적함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점차로 인식하게 되었다.

손해보험분야에서 위험관리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경영관리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방침을 외형실적위주에서 위험관리위주로 전환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점, 점포, 대리점 등의 경영실적평가를 거수보험료 실적위주에서 수익성을 위주로 한 평가제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익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내부통제를 위한 원가계산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사는 위험관리업무 및 보유한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정보지침 등에 대하여 각사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underwriting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이다.

세째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언더라이팅전문 인력을 교육, 육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네째 손보사들 상호간에 위험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underwriting 경험이나 사례를 상호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손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위험관리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은 보험요율체제면과 재보험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보험요율체제면에서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손보사업의 효율형태는 협정요율과 비협정요율로 대별할 수 있다. 비협정요율에는 범위요율, 개별요율, 권고요율이 포함된다. 보험 종목별로 상이하지만 총수입 보험료 가운데 약 75%가 협정요율에 의존하고 있어 그 경직성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협정요율상의 효율체제도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underwriter가 자율적으로 rating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

정요율체계를 등급별로 다양화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에 범위요율, 개별요율 및 권고요율의 영역을 확대, 재조정하는 것이 underwriting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재보험측면에서 위험관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보유의 최고한도를 위험종류별로 차등화하고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각 원보사의 담보능력(자본금+잉여금) 정도에 따라서 보유한도를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방법.

둘째 현행 재보험관리규정의 관리대상종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방법.

세째 각 원수사들의 담보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본금 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보험사업은 위험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특수한 경영체이기 때문에 underwriting 업무의 질적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손보사업은 각종의 위험상황을 정확히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업은 고객에게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재해 및 사고의 방지와 손해를 경감시키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위험관리업무를 경시하여 왔기 때문에 고객에 대하여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분야에서 위험관리업무가 잘 수행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